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471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2579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가단147144 판결

전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5. 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83,435,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435,35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개명 전 이름 C)는 2014. 10. 13. D와 사이에, B가 D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E아파트 F호’를 임대기간 ‘2014. 11. 13.부터 2016. 1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위 보증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D은 B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에서 차임 미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83,435,350원을 지급하였다.

다. B는 2005. 5. 20. G에게 서울 송파구 H 소재 제1층 I호, J호를 매도하였다. B는 세무서에 위 매도가액을 195,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근거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B의 위 매도가액은 실제 465,000,000원이었고, 이에 잠실세무서장은 2016. 5. 2.경 B에게 양도소득세 191,613,970원의 과세처분(납부기한 2016. 5. 31.)을 하였고, 이후 독촉(독촉납부기한 2016. 6. 30.)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B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를 D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D으로부터 2016. 10. 31. 325,670원, 2016. 11. 1. 83,109,680원 합계 83,435,350원의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증여 당시 B는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가액 배상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B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도록 하였는데, B와 피고 사이의 변제 약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개시된 2014. 10. 13.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가 피고로 하여금 보증금을 받도록 피고와 약정한 시점이 2014. 10.경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 부존재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잠실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2011. 6. 1.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의 부존재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B에게 ‘2016. 6. 30.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냈으나,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B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은 채 2021.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B가 서울 송파구 H 소재 제1층 I호, J호를 매매대금 46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면서, 세무서에 매도가액이 195,000,000원이라고 허위로 작성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납세자인 B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의 위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B에 대한 위 2016. 5. 2.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6. 5. 31.로부터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5. 2. B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독촉을 하여 독촉납부기한이 2016.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1. 10.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4267호), 위 사건에서 2017. 7. 4.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위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채무자인 B에 대한 이행청구도 아니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어떠한 효력이 직접 발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림

목 록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호의 임대인 에 대
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끝.

